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창업기업 확인) 044-204-762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044-204-72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2025. 3. 11.>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 12. 23.>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23.>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본조신설 2024. 8. 27.]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 2. 7.>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2.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국외창업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 나.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3.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의 해당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 8. 27.>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삭제 <2024. 2. 27.>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성과 관련 정보
2. 창업공간 관련 정보
3. 창업교육 관련 정보
4.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2026. 1. 27.>

-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2023. 2. 7.>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홍보
7.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text{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sqrt[n]{A/B} - 1$$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내용
3. 지원기간
4. 지원자격
5. 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 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 9. 2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3.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장용지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 공장건축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5. 부대시설면적을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출판, 행사·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2.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2. 27.>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같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2. 23.>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8. 27.>

제35조(업무의 지도·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진흥원
2. 지역창업전담기관
3.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2. 27.>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 2.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보고의 접수 및 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7.>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 「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 「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7.>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7.>

1. 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3. 2. 7.>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3. 24.>

1. 삭제 <2026. 3. 24.>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9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